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양형으로의 후퇴'가 만들어지는 구조

박사훈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A&P) 2026-01-10 05:07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피해자뿐 아니라 송금액, 전달책, 인출책으로 불리는 하위 가담자들이 사무실 문을 두드린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정말 범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간절한 호소는 실무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놓여 있다.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다 보면, 조사가 끝난 뒤 담당 수사관조차 안타까움을 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변호사님, 이분 사정이 참 딱하네요. 정말 모르고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현실적인 답변이 이어진다. "그래도 피해자가 분명하고 피해 금액이 크니, 저희로서도 웬만해서는 송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개인의 억울함보다 결과와 피해 규모가 먼저 평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종종 무죄 다툼보다는 양형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선택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며 이른바 '양형으로의 후퇴'라는 현상이 만들어진다.

미필적 고의는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를 의미한다. 문제는 실무에서 이 개념이 점점 넓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황상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면, 그 의심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도 곧바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보게 된다. 구인 광고의 형식, 비정상적인 업무 내용, 과도한 수당, 면접 절차의 부재 등은 재판 과정에서 세밀하게 분석된다. 이러한 정황들이 누적되면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무죄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선택이 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은 스치면 실형'이라는 말이 실무에서 회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변호인인 나도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다. 입증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일 때, 더 안전한 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억울한 사람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된다.

동시에 나는 의뢰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문자 메시지, 계좌 흐름 등 모든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살펴본 뒤, 적어도 나 스스로 먼저 "정말 범죄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료 분석뿐 아니라 의뢰인과의 깊은 대화다. 사람마다 금융·범죄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인식력은 다를 수밖에 없고, 특히 당시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 능력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밀히 살피다 보면 서류상으로는 보이지 않던 사정들이 드러나며, '이 사람은 정말 몰랐을 수밖에 없었다'는 진실에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다.

객관적인 자료 분석과 의뢰인과의 깊은 대화,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나는 비로소 무죄 주장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항소심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한 사례 역시,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과 의뢰인의 진실,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이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살핀 재판부의 혜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여러 정황상 범죄 인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그 판단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형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제안한다. 승산 없는 무죄 주장으로 의뢰인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말로 범죄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건 앞에서는,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그때부터는 기록한 장, 정황 하나를 더 집요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

물론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 배경 역시 충분히 이해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갖는 조직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현실 또한 분명 존재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판단의 중심이 “알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는 형사책임의 기본 원칙과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다. 예방과 엄벌이라는 목적이 형사법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면,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병행하는 것을 모순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러나 실무에서 합의는 결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다.

하위 가담자들은 고의는 없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사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합의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이기도 하면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현실적인 ‘플랜 B’가 되기도 한다. 합의 없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은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람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나는 무조건적인 무죄를 약속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스스로 납득한 진실에 근거해, 이러한 또 다른 측면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증책임의 원칙이라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현실 속에서 끝까지 놓지 않으려 노력할 뿐이다.

박사훈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A&P)